

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제43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6. 7. 14

발의자: 이정희, 김유자, 제갑생,
최인환, 이문상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(2006. 4.28)되어 사천시의회회의규칙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.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50조의2(2006. 4. 28. 개정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의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천시의회의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의회 회의 규칙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76조·제77조·제78조·제88조·제91조 및 제92조중 “징계자격특별위원회”를 각각 “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6조 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</p> <p>② (생략).</p>	<p>제76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----- -----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7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7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 ---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8조 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</p> <p>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</p>	<p>제78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</p>

<p>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 (이하 “징계대상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에 회부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----- ----- 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<u>윤리특별위원회</u> ----- -----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1조(심문 및 변명) ①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2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 의장은 <u>징계자격특별위원회</u>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1조(심문 및 변명) ① <u>윤리특별위원회</u>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2조(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 의장은 <u>윤리특별위원회</u>로부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발취

[지방자치법]

제50조의2(윤리특별위원회)의원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.[본조신설 2006.4.28]

제71條 (議員의 資格審査) ①地方議會의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在籍議員 4分の 1 이상의 連署로 議長에게 資格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.

②被審議員은 자기의 資格審査에 관한 會議에 出席하여 辨明은 할 수 있으나 議決에는 참가할 수 없다

제75조 (모욕등 발언의 금지)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8조 (징계의 사유)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. <개정 2006.4.28>